

의안번호	2211569
의 퇴 인	임오경의원
회 답 일	2025. 8. 8.
추 계 번호	25C3836
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조의3(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)	제8조에 따라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설치·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공연자, 관람자 및 종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(제1항)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의 종류, 보험가입 대상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2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8조의3(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(안 제8조의3)

- 개정안은 제8조¹⁾에 따라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설치·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서, 보

- 1) 「공연법」 제8조(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라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「국유재산법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그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험가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

- 다만, 안 제8조의3제2항에서 손해배상책임보험의 종류, 보험가입 대상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, 보험가입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현시점에서 보험 종류 및 금액을 가정하여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
 - 참고로,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 공연장 책임보험 가입 현황은 다음과 같음

[표] 공공 공연장 책임보험 가입현황

(단위: 개)

지역	공공 공연장	조사응답 공연장 (A)	책임보험 가입 공연장 (B)	가입률 (%) (B/A)	가입보험료 총액(천원) (C)	평균 보험료(천원) (C/B)	비고
서울	110	87	76	87.4%	220,257	2,898	
부산	32	29	28	96.6%	40,094	1,432	
대구	23	8	7	87.5%	20,780	2,969	
인천	33	33	31	93.9%	28,556	921	
광주	25	25	20	80.0%	29,817	1,491	
대전	18	—	—	—	—	—	미제출
울산	13	9	9	100%	4,221	469	
세종	3	3	3	100%	2,911	970	
경기	136	—	—	—	—	—	미제출
강원	44	15	15	100%	8,252	550	
충북	21	17	17	100%	11,227	660	
충남	41	41	38	92.7%	65,797	1,732	
전북	44	39	37	94.9%	43,485	1,175	
전남	39	23	21	91.3%	48,949	2,331	
경북	47	41	31	75.6%	317,133	10,230	
경남	49	47	45	95.7%	24,945	554	
제주	11	10	8	80.0%	9,868	1,234	
합계	689	431	390	90.4%	876,291		

자료: 문화체육관광부

- 따라서 개정안은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사항을 현 단계에서 파악하기 어려워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)에 해당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assembly.go.kr